연구윤리 질의응답 살펴보기

표절

책이나 학술지 등에서 기존의 기술적 방법 인용



2

책이나 학술지 등에서 기존의 기술적 방법을 인용할 때 표기방법이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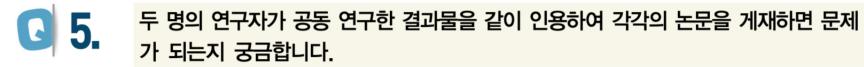
논문 작성과 관련하여 기존의 기술적 방법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앞서 정의된 책이나 학술지 등에서 내용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방법의 정리가 총 8페이지 이내가 되어 짧게는 한문단 길게는 반 페이지 정도 참고문헌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인용표기를 어떻게 해야 표절이 되지 않나요?



원문 그대로를 인용하여 사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큰 따옴표를 사용하고, 5줄 이내로 인용 문구를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5줄 이상의 분량을 그대로 따올 경우, 문단을 분리하여 기록하고, 각주를 달게 되어있습니다. 즉, 본문보다 작은 사이즈로 문단을 만들어 글자도 좀 작게 기록하는 형식입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선행연구에서의 기술적 방법 등을 문헌연구의 형태로서 논문을 작성할 경우 꼭 필요한 부분만을 인용하며, 인용 분량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신규연구결과로서의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동 연구 결과물을 같이 인용하여 각각의 논문으로 게재



같은 연구실 선배와 공동 주저자로 학술지 논문을 게재하였고, 연구실 선배가 먼저 졸업하면서학위논문을 작성할 때 해당 논문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추후 후배의 학위논문에도 상당 부분의 내용 및 그림이 겹치게 될 경우,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단독이든 공동저자이든 이미 전문 학술지(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발행되고 동료심사를 거쳐 논 문을 출판함)에 공식 발표한 데이터나 연구 내용의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활용할 때에는 반드 시 출처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본인의 학위논문이든 학술지 논문이든 앞서 발표된 논문의 주요 내용과 비교하여 차별화가 있어야 본인의 연구가 학술적인 가치와 의미를 갖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1) 자신의 것이든 타인의 것이든 이미 학술 논문/학위논문 내용을 '일부 인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인용된 부분마다 빠짐없이 그 '인용표시'와 '참고문헌' 표시가 확실해야 하며 2) 우려가 되는 것은 현재 작성 중인 학위논문에서 이미 발표한 학술 논문/학위논문의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입니다. 먼저 발표된 학술 논문/학위논문의 내용이 현재 작성 중인 학위논문의 내용과 상당히 큰 비중으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면 '중복출판'이 됩니다. 인용은 어디까지나 꼭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일부'만 하는 것이지, 학위논문 전체가 이전에 발표된 문헌들과 유사해서는 안 됩니 다. 따라서 논문 구성을 다르게 하면서. 본인이 발굴하고 연구한 새로운 내용을 많이 추가하시 기 바랍니다.

인용표시 없이 감사의 글로만 표기



인용표시 없이 감사의 글로만 표기한다면 표절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재(영문법) 출판을 하면서 먼저 출판된 교재 내용 일부를 별도의 인용표시 없이 교재 '머리말'에 인용된 교재의 저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라고만 표기한다면 표절될 수 있나요?



자신의 단행본 또는 논문에 타인의 중요한 아이디어나 연구 내용을 활용할 때는 반드시 정확 하게 출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특히 유의하여야 할 것은 타인의 저작물 속에 있는 구 체적인 표현(단어, 문장, 문단)이나 표, 그림, 사진 등을 직접 인용할 때는 인용부호와 함께 페 이지 등 정확하게 출처표시를 하고 원저자(또는 출판사 등 저작권을 소유한 자)에게 허락을 받 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윤리문제뿐만 아니라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이기에 더욱 민감할 수 있습니다. 단행본의 경우 종종 머리말 등에 포괄적으로 "이 저서를 발간함에 있어 00에게 또 는 00저작물에 크게 도움을 받았다"라고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는 본문에서 활용된 타인의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어서. 독자의 입장에서는 어디까지가 원저자의 것이고 어디까지가 연구자의 것인지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 한 방식은 올바른 인용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저작물에 타인의 저작물의 일정 부분이 직접 인용된 경우. 감사의 글 등에서 포괄적으로 밝히는 것보다 인용부호와 함께 정확 한 출처표시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문장유사도와 표절 기준



7. "2008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국문 6어절 이상/영문 9어절 이상 일치하면 표절이라는 기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들었는데 관련하여 자료가 궁금합니다.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에서 국문 6어절 이상 또는 영문 9어절 이상 일치하면 표절이라고 명시한 관련 지침, 또는 공문 등의 자료가 있나요?



"국문 6어절 이상"이 연속 동일하면 표절로 판단한다는 것은 2008년 교육부가 수행한 "인문 사회과학분야 표절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에 따른 것이며, 많은 대학들이 여기에 따라 논문 표절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영문 9어절 이상"으로 표절 기준을 삼는 것은 국내 C업체의 기준입니다. 반면에 해외업체 Turnitin은 "연속 6단어 이상"을 표절기 준으로 삼고 있습니다(따라서 "연속 5단어 이하"는 표절 검사에서 제외).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1) 논문의 성격에 따라 표절률이 높게 나와도 표절이 아닐 수 있고, 표절률이 낮게 나와도 표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가 직접 논문을 보고 최종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며, 2) 표절검사프로그램은 사용자(검사를 하고자 하는 주체)가원하는 바에 따라 표절기준이 되는 단어 수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계적인 문장유사도는 표절을 규정짓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적절하다고 봅니다. 동일한 단어의 나열 전후로 연결되는 사상들이 기존과 차별화되는지 여부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내주 인용방법

내주 인용방법이 궁금합니다.

내주를 표시할 때, 보통 (저자명, 출판연도: 인용 면수)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것과 내주 참고문 헌의 경우 정기간행물이면 논문제목(2000.10.10)~ 연월까지 표기하는 게 허용된다는 것을 알 고 있습니다. 그럼 내주도 정기간행물이나 인터넷 기사일 경우 연월까지 써도 되나요?

내주 표시방법은 (저자명, 출판연도: 인용 면수)가 맞습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보통월 단위로 발행되므로 연월까지 쓰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문기사는 하루 단위로 발행되므로 '일'까지 표시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자료의 경우, 인터넷 자료 본문 안에 정확한 날짜가 표시되어 있다면, 그 날짜를 써야 합니다. 연도 또는 월까지만 표시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연도 또는 월까지만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 자료 안에 날짜를 짐작할 수 있는 표시가 전혀 없다면 주석에 쓰지 않아도 무방합니다(표시하고 싶어도 표시할 수가 없으니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인터넷 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인터넷 자료를 확인한 날짜"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자료는 홈페이지 이전, 폐쇄, 업데이트 등으로인해 빈번하게 사라질 수가 있으므로 "내가 확인한 날짜"가 반드시 표시되어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저널에 게재되지 않는 워킹페이퍼 인용

참고문헌 표기는 반드시 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2.

저널에 게재되지 않는 워킹페이퍼를 인용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학술 저널에 게재되지는 않았지만 온라인에 등록한 워킹페이퍼(저널 게재가 되지 않은 상태, 공 저자 존재)를 인용 또는 편저해서 학위논문을 작성할 경우 일반 참고문헌과 동일하게 표기하여 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표기해야 하나요?



일단 문서화된 모든 저작물(외부에 발표가 되든 안 되든)은 모두 저작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 다. 따라서 모든 자료는 적절한 인용절차를 거쳐 사용되어야 마땅합니다. "게재되지 않았지만 온라인에 등록한 워킹페이퍼"라는 것이 누구를 대상으로 공개되며 정확히 어떤 성격의 글인지 정확히 판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큰 범주 안에서 말씀드리면, 인용 또는 편저를 통해 또 다른 글을 작성할 경우 인용 방법은 워킹페이퍼라 해서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 역시, 저자, 발행연도. 글 제목. 발행기관(기관지명). 권·호 페이지. 그리고 마지막에 "워킹페이퍼"임을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해설서〉(페이지 158~177)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http://cre.or.kr/board/?board=textbook&no=1386453 참고로. 1) 단순 인용일 경우 저자든 저자가 아니든 인용 범위를 최소화하고 충실히 인용표기 를 해주시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2) 단순 인용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예를 들어. 문단 이상을 넘어서는 범위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해당 워킹페이퍼의 발행인(발행기관) 및 저자들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직접 인용함을 나타내는 방식(예:별도의 단락을 만들어 작은 크기의 문단으로 표시)을 통해 인용토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승인을 얻었더라도 각주와

저자자격과 올바른 저자표기

제 1저자(주저자)가 2명일 때 기술 방법

C

학술지 논문 투고 시, 제 1저자(주저자)가 2명일 때 기술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2명이 함께 논문을 작성하고 있으며, 기여도가 동일한 상황이므로 주저자를 2명으로 기재하고 자 합니다. 구체적인 문의 사항은, 1) 주저자를 2명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2) 모든 학술지 또는 일반적인 기술 지침이 있습니까? 보통 주저자, 공동저자 순으로 이름을 기재하고 각주에 따로 표시하는 논문들을 볼 수 있는데, 복수 주저자에 대한 기입 방침이 있나요?, 3) 만약, 학회지마다 다르다면 각 학회지에 별도로 문의를 해야 하나요?



- 1) 학회 및 저널의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외국 저널들에서는 '공동 주저자' 또는 '공동 제1저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co-first author'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두 사람의 이름이 동시에 인쇄될 수는 없으므로, 한 사람의 이름은 먼저 나오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나중에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각각 'first co-first author', 'second co-first author'라고 합니다.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와야 하는가는 공동 주저자 합의로 정해야할 수도 있고, 학회 자체 규정(예: Last name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야할 수도 있습니다.
- 2) 공동 주저자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는 개별 대학마다 다릅니다. 교수 평가 시, 'first co-first author'와 'second co-first author'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대학도 있지만, 'first co-first author'만 주저자로 인정하고, 'second co-first author'는 공동 저자(co-author) 로만 인정해주는 대학도 있습니다.
- 3) 해당 논문의 Impact Factor는 2인의 공동 주저자가 나누어 평가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IF 10.0의 논문을 발표했고, 2인의 공동 주저자가 있다면 각각 5.0씩 IF를 기록하게 됩니다.

지도학생이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단독 명의로 게재

지도학생이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단독 명의로 게재, 발표하는 경우, "부당한 저자표기"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 제1항 4호에서는 "지도학생의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를 부당한 저자표기라정의하였습니다. 혹시 이에 반대되는 경우, 즉 "지도학생이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단독 명의로 게재, 발표하는 경우"는 부당한 저자표기라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지도교수의 도움을 받았다고 인정한다면. 지도교수를 교신저자 등으로 포함해야 하나요?



- 1) '부당한 저자 표시'란 연구 논문의 창출에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포함하거나 논문에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하였음에도 저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2) 석박사 과정의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학술지에 게재하고 자 할 경우, 바람직한 저자표기는 지도학생이 제1저자, 지도교수가 공동저자로 등재하는 것이 연구윤리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학위논문이 마무리되기 까지 지도교수가 아이디어 발굴, 연구의 설계 및 데이터 분/해석, 논문 작성 등에서 기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 3) 그러나 지도교수가 학위논문을 위한 연구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지적 기여를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이와 동일 내지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할 때 지도교수가 공동저자, 더 나아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등재되는 것은 연구윤리에 어긋나는 부당한 저자표기에 해당합니다.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한 학술지 논문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지도교수의 기여(저자로서의 자격)에 대해 어떤 단일의 기준을 가지고 획일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하지만 학위논문 과정이나 이를 학술지 논문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지도교수님이 지적 기여가 충분하지 않았다면 학위를 받은 학생 단독 저자로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교신저자 수가 2인 이상일 경우

조금합니다. 주 교신저자 수가 2인 이상일 경우와 관련하여 연구윤리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강금합니다.

제 1저자의 경우, 해당 논문의 기여도가 같다고 표기되어 있다면 2인이 될 수 있고, 주교신저 자의 경우에도 2인 이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학술적으로 맞는 지, 혹은 이 부분이 연구윤리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1) 교신저자란 논문 투고 과정이나 그 이후 학술지 편집인과 교신하면서, 동료심사, 출판과정 동안 투고된 학술지와의 소통에 연구진을 대표하여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논문의 공동저자라고 하더라도 논문을 투고하고 그 과정에서 편집자와 소통하고, 논문의 투고가 완료된 후에는 독자와 소통하는 1차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있으며 그 사람을 교신저자라고 합니다. 보통 학술지와 소통하는 사람은 1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신저자는 1명인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학술지의 내부 규정에 따라 2명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한 논문의 서로 다른 연구를 맡아 협력 연구를 하는 경우, 각 연구실에서 한 명씩 교신저자를 두어 독자에게 서로 다른 연구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때, (2) 제 1저자이자 교신저자가 학계를 곧 떠날 수 있는 박사과정학생이거나 박사후 연구원일 경우, 대신 독자의 질의에 답하고 부가적인 자료에 대한 요청을 하기위해, 3) 한 명이 다른 임상시험등록과 같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든지 하는 경우 발생할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교신저자에 대한 규정은 학문분야에 따라 다르며 학술지 내부 규정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 2) 다만, 일부 저자들은 소속 기관에서 실적 평가를 좀 더 잘 받기 위해 교신저자를 두 명으로 하게 해달라고 한다거나, 제 1저자를 두 명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교무팀에서 주 교신저자가 2인 이상인 이유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학원생의 졸업 연구 보고서를 지도교수가 단독저자로 논문 게재

0

19 대학원생의 졸업 연구 보고서를 지도교수가 단독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경우

석사과정 대학원생 A의 졸업 연구 보고서의 내용을 지도교수 B의 단독명의로 학술지에 논문게 재를 한 경우 지도교수 B의 행위는 "표절"로 보아야 할 지, "부당저자표기"로 보아야 할까요?



- 1) 문의하신 유형은 전형적인 '논문 가로채기'로서 매우 중대한 연구부정행위입니다. A대학원생의 '졸업 연구 보고서'라는 표현이 애매한데, A대학원생의 '보고서'를 B교수가 단독 저자로서 저널에 게재한 경우, B교수의 '표절'이며 '부당한 저자표기'입니다. 저자표기는 해당 저작물(보고서든 논문이든 단행본이든)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그 저자수와 순서가 공정하게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2) A대학원생의 '졸업 학위논문'을 B교수가 단독 저자로서 저널에 게재한 경우, '표절'이며 '부당한 저자표기'입니다.
- 3) 해당 학문 분야의 관행에 따라, A대학원생의 학위논문을 학계에 처음 소개한다는 취지에서 요약 정리하여 저널에 발표할 경우 1회에 한하여 허용 가능하며, 이때 저자는 A대학원생 단독 저자 또는 A대학원생이 제1저자, B교수가 제2저자(및 교신저자)가 되어야 합니다. 학 위논문은 엄연히 A대학원생이 주도적으로 연구를 수행했다는 의미에서 A대학원생의 명의로 발표되는 것이며, B교수는 단지 조력자이기 때문입니다.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의 기준

22.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A

해당 연구나 논문에서 가장 기여도가 높은 연구자가 제1저자가 되는 것이 합당하며, 연구 과 제에 대해 잘 알고 투고 학술지 편집인이나 다른 연구자 및 독자들의 문의에 잘 응답할 수 있 는 연구자가 교신저자가 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연구과제 책임자"가 제1저자가 되는 것이 합당한가. 교신저자가 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정해진 공식적인 규칙이 있는 것이 아 니고 이는 참여한 연구진이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정해 실천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혹시 연구 비 지원기관에서 저자의 범위나 순서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문의를 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연구과제 책임자"가 가장 기 여도가 높고. 따라서 제1저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해당 논문에 필요한 데 이터 제공. 공헌도가 있을 경우"는 이 문장만으로 본다면 공동저자이기보다는 "감사의 글"(acknowledgement)에 언급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데이터 생산, 분석, 해석"이 매우 중요하고 연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면 공동 저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은 저자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공헌보다도 해당 연구에서 '학술적(지적) 기여'를 하여야 한다는 점인데 이는 학문 분야별로도 차이가 없습니다.